# 2015
# 생활문화예술 활동지원안내(3차)

제주문화예술재단
JEJU CULTURE & ART FOUNDATION

## 차 례


2015년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 추진목표 ····· 02
2015년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 추진방향 ····· 02
2015년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 주요내용 ····· 03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인터넷 지원신청 이용 안내 ····· 04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인터넷 지원신청 관련 FAQ ····· 05
2015년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 공모개요 ····· 06


### 2015년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 공모 안내


지원사업 총괄 ····· 11
1. 문학창작활동 지원 ····· 12
2. 공연예술 지원 ····· 13
3. 전시예술 지원 ····· 14
4. 다원 및 예술일반 지원 ····· 15
5. 국제문화예술교류 지원 ····· 16
6. 계층별문화나눔사업 지원 ····· 17
심의절차 및 기준 ····· 18


### 사업예산 및 지원금 집행관련 안내


사업예산 및 지원금 집행관련 안내 ····· 19
첨부파일 양식 ····· 23

# 2015년 생활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 추진목표

ㅇ 문화예술의 활동촉진과 역량강화로 창조적 예술활동 여건을 조성하여 도민이 다양한 문화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문학창작 · 공연예술 · 전시예술 · 다원 및 예술일반 · 국제문화예술 교류 · 계층별 문화나눔사업 등을 지원

ㅇ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창작의욕 고취 및 예술성 ·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추진

# 2015년 생활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 추진방향

1. 지원조건 완화를 통한 기초 문화예술진흥 촉발

**2. 공모사업 심의에 대한 객관성·공정성·투명성을 갖춘 심의 원칙**

❍ 책임있는 심의 방식으로 전환

- 사업별 통합 심의, 분야별 · 장르별 심의, 심층 인터뷰, 실연 심의, 현장 실사 등 각 사업에 적합한 현실성 있는 심의 방식을 채택하고 선정사업에 대한 평가 및 컨설팅까지 확대

❍ 객관적 OCR 카드 채점방식 적용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OCR 카드 채점방식'을 통한 최종순위 확정 및 지원규모 결정

❍ 장르, 연령, 성별, 경향, 지역별 균형을 고려한 심의위원 구성

❍ 심의위원 위촉 제한 및 심의회피 의무화

- 이해관계에 있는 단체에 대한 심의위원 위촉(주요 문화예술단체장)은 지양하도록 하고, 지원신청한 자는 심의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음
- 지원신청자와 민법 제777조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거나 지원사업과 관련된 심의위원은 동 사업 심의회피 의무화

※ 예) 지원신청사업에 작가(작곡가), 감독, 연출가, 안무자, 지휘자, 기획자 등으로 참여할 경우

- 심의위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심의회의 개의 전에 모든 심의위원에게 심의회피 이행 서약서 반드시 받음

**※ 본 지원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역협력형사업 세부지침에 의거, 지원신청, 교부, 정산을 실시합니다.**



# 2015년 생활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 주요내용

**자부담 비율**

■ 본 사업의 자부담은 사업비 대비 대상사업에 따라 30% 또는 50% 이상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대상사업에 따른 보조금 자부담률

| 대상사업 | 자부담률(최소) | 비고 |
|---|---|---|
| 세미나, 교육, 워크숍 | 30% | |
| 발표 및 기획사업 | 50% | |

**지원제한**

■ 개인은 1개 사업, 단체는 〈문학창작활동지원〉, 〈공연예술지원〉, 〈전시예술지원〉, 〈다원 및 예술일반지원〉,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계층별 문화나눔 사업지원〉 사업 내에서 2개 사업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생활문화예술활동지원 1,2차 공모에서 1개 사업에 선정된 단체는 1개 사업만 신청 가능하며, 2개 사업에 선정된 단체는 신청 불가

※ 지역협력형사업 선택과 집중 지원사업 (우수기획프로그램지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창작공간프로그램지원) 지원대상자는 지원신청 불가

**심의절차 확대**

■ 2015년 생활문화예술활동 지원 공모사업은 행정 심의, 전문가 심의, 인터뷰 심의(대상 :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사업)로 진행합니다.

**보조금 사후지원 및 분할 교부**

■ 발간사업**(1차 50%, 2차 50%)**, 1천만원 초과 보조금 지원사업**(1차 60%, 2차 40%)**은 보조금을 분할하여 교부하며, 1차 보조금 집행내역 확인에 따라 2차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고 교부합니다.

**보조금수령자 '보조금 교부 및 정산 교육' 의무 이수제 도입**

■ 모든 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 교부 신청 전에 회계 실무 담당자를 지정하고, '보조금 교부 및 정산 교육'을 1회 이상 의무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 인터넷[1] 지원신청 이용 안내

[1]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 제주문화예술재단 아이콘 선택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은 사업공고, 지원신청, 교부, 성과보고 등 모든 행정 절차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용방법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지원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지원신청은 서면으로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온라인상으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단, 첨부서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은 하나의 ID와 비밀번호로 이용 가능하므로, 이전에 다른 기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 가입한 경험이 있는 예술인/단체는 다시 회원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은 제주문화예술재단 홈페이지 ID로는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 인터넷 지원신청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단, 마감일은 18:00까지) 자유롭게 신청서를 수정할 수 있으나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 제출한 뒤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최종제출 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신청 취소 후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신청서는 언제든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조회 또는 출력이 가능합니다. 또  심의결과도 이 사이트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지원신청 절차 개요**

| | | |
|---|---|---|
| 1.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접속 (http://www.ncas.or.kr) 제주문화예술재단 아이콘 선택 | ⇒ 2. 로그인 후 회원정보 업그레이드 | ⇒ 3. 로그인후 첫 페이지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지원사업명의 신청분야를 클릭 |
| 4. 지원신청서 작성 (작성후 반드시 '저장' 선택) | ⇒ 5. 최종제출 지원신청서 작성이 모두 완료된 경우 '최종제출'를 선택하여 제출 | ⇒ 6. 나의 신청현황 확인 최종제출된 지원신청서를 확인 메뉴 : 신청관리=>지원관리=> 나의 신청현황 |

**※ 공모신청 마감일의 경우 신청자의 PC환경 등의 영향으로 지원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서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 인터넷 지원신청 관련 FAQ

**Q1 회원가입 시 주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A1 1) 단체의 경우 반드시 이전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극단제주예술'는 '극단 제주예술', '극단 제주 예술', '제주예술'로 사전 가입되어 있을 수 있음
2) 단체 회원가입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대표자가 개인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문화재단 등 타 기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이용자는 회원가입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Q2 지원신청을 하려고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 접속했는데, 지원신청 가능한 사업 목록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A2 1) 사업주관 기관이 「제주문화예술재단」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다른 기관으로 표시될 경우 우측상단의 '사업주관 기관 변경'을 선택하여 「제주문화예술재단」을 다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지원신청접수 시작일시 이전에는 인터넷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없습니다. 2015년 생활문화예술 지원사업의 인터넷 지원신청서 작성은 2015. 10. 14.(수)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Q3 지원신청서 작성 시 중간 저장이 가능한가요?**

A3 지원신청서 각 탭별로 있는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그 탭에서 작성한 내용이 저장됩니다.

**Q4 한글 파일에 미리 작성한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도 가능한가요?**

A4 붙여넣기는 가능하지만 표, 이미지는 복사되지 않으므로 가급적 작성 화면에서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Q5 지원신청서 최종제출 후에 수정, 신청서 보기, 출력이 가능한가요?**

A5 1) 지원신청서 최종제출 후에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최종제출 후 수정하실 경우 [나의 신청현황]에서 해당사업을 선택하여 내용을 조회 후에 '**제출취소**'를 하신 후 신청서를 처음부터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전 내용은 저장 되지 않습니다.
2) 지원신청서 최종제출 후에도 [나의 신청현황]에서 신청서 보기와 출력은 가능합니다.

**Q6 첨부파일은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

A6 첨부파일은 제시한 증빙자료 양식파일에 작성하시고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5년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 공모 개요

## ❍ 공모일정 및 신청대상

(단위 : 천원)

| 지원유형(세부사업) | 지원규모 (지원금) | 접수 | 신청대상 |
|---|---|---|---|
| 문학창작활동 지원 | 130,500 | 공고 : '15. 10. 12. ~ 10. 23.<br>접수 : '15. 10. 14. ~ 10. 23. 18:00 | 예술단체, 예술인 |
| 공연예술지원 | | | |
| 전시예술지원 | | | |
| 다원 및 예술일반지원 | | | |
| 국제문화예술교류 지원 | | | |
| 계층별 문화 나눔 사업지원 | | | |

**※ 접수 마감일 18:00 이후로는 온라인상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 지원신청 대상자격(공통사항)

• 지원신청 할 수 **있는** 주체(단체, 개인)

○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단, 지원신청 사업장소를 제주로 한정)**

○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제주출신 예술인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에 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지정받은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

○ 문화예술 공간(시설) 운영자

○ 기타 해당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단체 및 예술인(사업별 세부공고내용 참조)

※ 단체의 경우 사업등록증,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 등이 있어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지원신청과 정부의 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사례비 원천징수 등이 가능합니다.

※ 임의단체의 경우, 2014년 이전에 기존 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돼 있어도 지원신청을 할 수 없으니 반드시 사업등록증,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을 사전에 갖추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신청 할 수 **없는** 주체(단체, 개인)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단,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가 대표로 있는 단체는 지원신청 가능)

○ 국 · 공립(도 · 시립) 문화예술기관 · 단체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주목적이 순수 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학교·종교기관·친교기관 등 및 이들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단체

○ 초 · 중 · 고 및 대학교의 동아리 또는 재학생들로 구성된 단체

○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특별자치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지원금 수혜 후, 그 집행 및 관리가 부적절하여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통보된 단체(개인)

○ 제주문화예술재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종료하였으나, 정산기한 이후 91일 이상 정산보고서를 미제출한 단체(개인) (단, 정산보고서 제출 시 지원신청 자격 부활)



○ 2014년 지원 사업 정산보고서를 2015년도 지원사업 접수마감일까지 미제출한 단체(개인)

○ 보조금 위반행위 단체·개인(관련 법령·규정의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름)

○ 문예진흥기금 등 교부된 지원금의 반납 요청을 받았으나 소정 기한을 지나 지원신청접수기한 마감일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개인

## ❍ 지원신청 대상사업 (공통사항)

• 지원신청 할 수 **있는** 사업

○ 각 지원사업의 지원목적과 자격에 부합하는 모든 문화예술 관련 사업

○ 자부담률 이상의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진행하는 사업

• 지원신청 할 수 **없는** 사업

○ 동일 사업에 대하여 당해 연도의 국고,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예술위원회의 직접 지원사업 등 다른 세부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

* 동일여부는 지원사업의 목적과 효과, 비교 대상 사업 간 주요내용, 인적·물적 구성요소, 동일요소의 사업 내 비중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

〈 예 시 〉

■ 지원사업의 목적과 효과 측면에서 ①예술가·단체를 위한 창작역량강화·창작여건조성·예술인력육성 사업과 ②예술향유자 또는 일반인을 위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의 보급·확산사업은 서로 별개의 사업으로 봄

○ 제주특별자치도 · 행정시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는 사업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또는 운영비용이 포함된 사업

○ 시설의 건립 · 매입 · 재건축사업

○ 보조금수령자의 단순 재교부 사업

○ 기금 적립 및 융자 관련사업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산하 조직 포함) 및 사설 교육기관의 사업

○ 순수문화예술활동이 아닌 영리, 판촉, 선교, 학업, 정치 등이 주목적인 사업

○ 특정 정파나 정치적 입장에 편향된 사업

○ 자부담 비율이 미달되는 사업

☞ **지원신청 할 수 없는 개인(단체) 및 사업의 경우에 제출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 사업기간

• 지원사업 기간 : 사업선정결과 발표 후 ~ 2015. 12. 31.

## ❍ 지원신청방법 및 첨부자료

• 지원신청서 제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 정보방〉내 회원정보는 반드시 작성 및 최신정보로 수정해야 함**

• 첨부자료(활동증빙자료) : 온라인 접수

※ 지원유형에 따라 제출서류, 수량이 다르므로 지원사업안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함

※ 기간 내에 첨부자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됨

## ❍ 공모지원 신청

• 공고기간 : 2015. 10. 12.(월) ~ 2015. 10. 23.(금)
• 접수기간 : 2015. 10. 14.(수) ~ 2015. 10. 23.(금) 18:00
• 공모지원유형
  ○ 문학창작활동 지원
  ○ 공연예술 지원
  ○ 전시예술 지원
  ○ 다원 및 예술일반 지원
  ○ 국제문화예술교류 지원
  ○ 계층별 문화 나눔 사업 지원
• 사업설명회
  ○ 2015. 10. 13.(화) 16:00 / 제주문화예술재단 회의실 6F

## ❍ 지원심의 결과발표

• 제주문화예술재단 홈페이지 공고(2015. 10. 28.(수) 예정)

## ❍ 유의사항

• 반드시 지원사업별 신청자격, 제출서류 등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예산계획 작성(사업예산 및 지원금 집행관련 안내 참고)
  ○ 포괄적 예산편성 지양 : 구체적인 산출근거(단가 및 수량)에 의거하여 작성
  ○ 수입예산 : 사업비 최소 자부담률 이상 자체 재원 확보가 원칙(개인 포함)
  ○ 지출예산 : 사업수행을 위한 직접 경비지원이 원칙이며, 지원금 사용이 인정되지 않는 경비는 사용 불가
• 공연예술 분야의 경우, 사업 수행 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보급하는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장합니다.(추후 별도 공지)
• 지원사업 집행 관련 규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지원금 집행요령'에 근거하여 모든 보조금수령자는 신청서 제출 전에 재단의 '지원금 관리규정'을 충분히 숙지해야 하며, 신청서 제출 시 해당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지원 선정된 예술인/단체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지원금 집행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 지원 선정될 경우 농협은행 지원금 전용 통장 및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해 상시 온라인으로 등록해야 함
  ○ 지원금 사용은 체크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계좌이체 결제를 한 경우에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급 받거나 원천징수를 통해 원천세 신고·납부해야 함(현금지출 불가)
• 지원신청서 작성에 있어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거나, 활동실적 증빙 자료가 미비하였을 경우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신청 대상사업에서 부속사업(협연/찬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법인 및 단체의 활동실적은 등기(설립)일이 아니라 **창단(창립)사업일** 이후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지원유형 변경 및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유의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발간, 1천만원 초과 보조금 지원사업은 분할교부사업입니다.
• 심의결과 발표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할 지원대상자는 지원사업 확정 공고 후 15일 이내 사업포기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해당기간에 사업을 포기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 및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단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지원금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조금수령자 사업설명회 및 교부, 정산안내 교육에 필히 참석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지원사업별 지원신청자격, 지원대상사업, 지원신청방법 등 세부내용 확인 후에 지원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2015년
# 생활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
# 공모 안내

1. 문학창작활동 지원
2. 공연예술 지원
3. 전시예술 지원
4. 다원 및 예술일반 지원
5. 국제문화예술교류 지원
6. 계층별 문화 나눔 사업 지원



## 생활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 Ⅰ 사업목표

○ 문화예술의 창작 촉진
○ 지역의 문화예술 창작 역량강화
○ 도민에 수준 높은 문화예술프로그램 공급

### Ⅱ 지원분야 및 규모

| 분야 | 주요사업 | 지원규모<br>(최저~최고) | 신청대상 |
|---|---|---|---|
| 문학창작 활동 | - 개인 창작집 발간<br>- 동인지, 문예지 발간사업 등<br>- 문학관련 기획사업 | 개인 150만원~250만원<br>단체 200만원~3,000만원 | 예술인(단체) |
| 공연예술<br>(연극,무용,음악,전통) | - 공연예술분야의 연주, 발표회<br>- 공연관련 기획사업 | 개인 250만원~1,000만원<br>단체 250만원~3,000만원 | 예술인(단체) |
| 전시예술 | - 전시 및 교류전<br>- 시각관련 기획사업 | 개인 250만원~1,000만원<br>단체 250만원~3,000만원 | 예술인(단체) |
| 다원 및 예술일반 | - 다원 및 예술일반 관련 발표회<br>- 다원 및 예술일반 관련 기획사업 | 개인 250만원~1,000만원<br>단체 250만원~3,000만원 | 예술인(단체) |
| 국제문화예술 교류 | - 국제 문화예술 교류 사업 등<br>- 학술세미나 등의 기획사업 | 개인 250만원~1,000만원<br>단체 300만원~3,000만원 | 예술인(단체) |
| 계층별 문화나눔 사업 | -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기획사업<br>-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사업 | 개인 150만원~1,000만원<br>단체 200만원~3,000만원 | 예술인(단체) |

### Ⅲ 우대사항

○ 공연예술분야의 유료공연으로 추진하는 사업
○ 문화정책상 우선 지원단체(예술인) : 전업작가, 전문예술단체(법인)
○ 전시 예술분야 중 사설갤러리를 대관하여 추진하는 사업
○ 제주를 소재로 한 창작작품
○ 자부담 부분을 확대하여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는 세부 예산을 편성한 사업

### Ⅳ 가감점 적용

○ 사업장 소재지역이 읍면 소재지로 대상(혜택)자가 지역주민인 경우 가점 부여

## □ 문학창작 활동

○ 지원목적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창작집 발간비 및 문학관련 기획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문학인들의 창작의욕 고취 및 문학창작의 저변 확대

○ 신청자격

| 구분 | 내용 |
|---|---|
| 개인 | - 등단 또는 개인 창작집 발간 후, 최근 1년간 도내 외에서 활발한 활동 실적이 있는 자 |
| 단체 | - 창립 문학지 발간 후, 도내외에서 1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단체 |

○ 대상사업

| 구분 | 대상 사업 | 지원규모 |
|---|---|---|
| 개인 | - 시, 시조, 수필, 소설, 희곡, 아동문학 등의 개인 창작집 발간 | 150만원~250만원 |
| 단체 | - 문예지, 동인지 발간<br>- 문학 · 출판 관련 기획사업 | 200만원~3,000만원 |

○ 제출서류

- 개인

· 활동실적 증빙자료 : 홍보물, 보도자료 등 서식(p.24 양식2-1)에 작성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첨부

· 수록작품원고 : 작가명을 삭제하고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첨부

| 장르 | 시, 시조, 동시 | 수필 | 평론 | 소설, 동화(단편) | 소설, 희곡, 동화(장편) |
|---|---|---|---|---|---|
| 분량 | 10편 | 3편 | 3편 | 2편 | 개요 및 작품요약 및 작품일부<br>(A4 20매 이내) |

※ 제출 작품은 온 · 오프라인 매체에 전혀 발표되지 않은 작품이어야 합니다. (발간 시에는 기존작품도 수록 가능)

※ 제출 원고 첫 장에 묶음 표지(p.23 양식1)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 단체

· 활동실적 증빙자료 : 홍보물, 보도자료 등 서식(p.26 양식2-2)에 작성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첨부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문예진흥법(제7조)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또는 단체는 증빙자료(등록증 사본) 1부 제출

**참고 및 유의사항**

○ 발간사업(개인창작집, 단체문학지)은 2015년 12월 26일전까지 발간을 완료하여야 함.

○ 동일인의 장르(시, 시조, 소설, 수필 등)간 중복신청 불가.

○ 인건비성 경비(사례비, 원고료 등 각종 수당 포함)는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 · 납부해야 함.

○ 단체대표자 및 보조사업자(개인)에 대한 원고료 및 개인 사례비 지급은 불가.

○ 지원사업의 자부담 비율(문화예술행사 50%, 세미나·포럼·워크샵 30%)



## □ 공연예술

○ 지원목적

공연예술(음악 · 연극 · 무용 · 전통 등)단체 및 개인 발표회 등의 지원을 통한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공연 활동 기반 마련

○ 신청자격

| 구분 | 내용 |
|---|---|
| 개인 | - 최근 3년간 도내 외에서 공연예술 1회 이상 실적이 있는 예술인 |
| 단체 | - 창단공연 후, 최근 도내 외에서 1년 이상 활동하고 1회 이상 실적이 있는 문화예술단체<br>(단, 사설문화공간은 개관 후 1년 이상 운영하고, 2회 이상 기획공연 실적이 있는 공간) |

○ 대상사업

| 구분 | 대상 사업 | 지원규모 |
|---|---|---|
| 음악 | - 작곡, 기악, 성악, 음악극(오페라), 대중음악(순수창작물) 등 음악 관련 사업 | 개인 250만원~1,000만원 |
| 연극 | - 창작극, 마임, 뮤지컬, 인형극 등 연극 관련 사업 등 | |
| 무용 | - 한국무용, 현대무용, 창작무용극 등 무용 관련 사업 등 | 단체 250만원~3,000만원 |
| 전통(국악) | - 전통연희, 국악, 전통무용, 창극 등 전통 관련 사업 등 | |

○ 제출서류

- 활동실적 증빙자료 : 홍보물, 보도자료 등 서식(p.24 양식2)에 작성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첨부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문예진흥법(제7조)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또는 단체는 증빙자료(등록증 사본) 1부 제출

**참고 및 유의사항**

○ 학부 및 대학원생의 석사학위청구 발표회, 행사 부속 행사는 제외됨.

○ 유료공연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심의 시 우대 적용함.

○ 단체의 연례적인 정기공연 지원은 지양(止揚)하며, 회원들의 작품으로 구성된 기획공연으로 신청하여야 함.

○ 전문공연공간이 아닌 장소(언론사, 종교기관, 학교, 회사, 공공기관)에서 개최되는 사업은 신청이 불가능 함.

○ 인건비성 경비(사례비, 원고료 등 각종 수당 포함)는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 · 납부하여야 함.

○ 단체대표자 및 보조사업자(개인)에 대한 원고료 및 개인 사례비 지급은 불가.

○ 지원사업의 자부담 비율(문화예술행사 50%, 세미나·포럼·워크숍 30%)

○ 사업장소 : 제주도내 문화예술인, 단체 - 도내, 도외 가능 / 제주도외 문화예술인, 단체 - 도내만 가능

## □ 전시예술 지원

○ 지원목적

시각예술분야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의 전시, 기획사업 등의 지원을 통한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활동 기반 마련

○ 신청자격

| 구분 | 내용 |
|---|---|
| 개인 | - 최근 3년간 도내 외에서 1회 이상 실적이 있는 예술인 |
| 단체 | - 창단 후, 최근 도내 외에서 1년 이상 활동하고 1회 이상 실적이 있는 문화예술단체<br>(단, 사설문화공간은 개관 후 1년 이상 운영하고, 2회 이상 기획전시 실적이 있는 공간) |

○ 대상사업

| 구분 | 대상 사업 | 지원규모 |
|---|---|---|
| 시각 | - 전시 및 교류전<br>- 전시관련 기획사업 | 개인 250만원~1,000만원<br>단체 250만원~3,000만원 |

○ 제출서류

- 활동실적 증빙자료 : 홍보물, 보도자료 등 서식(p.24 양식2)에 작성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첨부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문예진흥법(제7조)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또는 단체는 증빙자료(등록증 사본) 1부 제출

**참고 및 유의사항**

○ 학부 및 대학원생의 석사학위청구 발표회, 행사 부속 행사는 제외됨.

○ 사설갤러리를 대관한 사업과 전업 작가는 심의 시 우대 적용하며, 전업작가는 지원신청서 작성시 <개인신청인 및 단체대표자 소개> 페이지에 “전업작가” 라고 기재요망.

○ 전문전시공간이 아닌 장소(언론사, 종교기관, 학교, 회사, 공공기관)에서 개최되는 사업은 신청이 불가능 함.

○ 인건비성 경비(사례비, 원고료 등 각종 수당 포함)는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 · 납부하여야 함.

○ 단체대표자 및 보조사업자(개인)에 대한 원고료 및 개인 사례비 지급은 불가.

○ 지원사업의 자부담 비율(문화예술행사 50%, 세미나·포럼·워크숍 30%)

○ 사업장소 : 제주도내 문화예술인, 단체 - 도내, 도외 가능 / 제주도외 문화예술인, 단체 - 도내만 가능



## □ 다원 및 예술일반 지원

○ 지원목적

새로운 예술 영역의 확장에 기여하는 융·복합 예술활동을 활성화 하고, 장르 간의 융합 및 통섭을 통한 새로운 내용 및 형식의 예술창작 활동을 지원

○ 신청자격

| 구분 | 내용 |
|---|---|
| 개인 | - 최근 3년간 도내 외에서 1회 이상 실적이 있는 예술인 |
| 단체 | - 창단사업 후, 최근 도내 외에서 1년 이상 활동하고 1회 이상 실적이 있는 문화예술단체<br>(단, 사설문화공간은 개관 후 1년 이상 운영하고, 2회 이상 기획공연 실적이 있는 공간) |

○ 대상사업

| 구분 | 대상 사업 | 지원규모 |
|---|---|---|
| 다원 | - 다원 및 예술일반 관련 발표회<br>- 다원 및 예술일반 관련 기획사업<br>※여러 장르의 특성이 융합된 복합장르 예술<br>※예술의 다양성을 증진하는 예술활동<br>※문학, 전시, 공연 외 장르 | 개인 250만원~1,000만원<br>단체 250만원~3,000만원 |

○ 제출서류

- 활동실적 증빙자료 : 홍보물, 보도자료 등 서식(p.24 양식2)에 작성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첨부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문예진흥법(제7조)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또는 단체는 증빙자료(등록증 사본) 1부 제출

**참고 및 유의사항**

○ 학부 및 대학원생의 석사학위청구 발표회, 행사 부속 행사는 제외됨.

○ 유료공연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심의 시 우대 적용함.

○ 단체의 연례적인 정기공연 지원은 지양(止揚)하며, 회원들의 작품으로 구성된 기획공연으로 신청하여야 함.

○ 전문공연공간이 아닌 장소(언론사, 종교기관, 학교, 회사, 공공기관)에서 개최되는 사업은 신청이 불가능 함.

○ 인건비성 경비(사례비, 원고료 등 각종 수당 포함)는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 · 납부하여야 함.

○ 단체대표자 및 보조사업자(개인)에 대한 원고료 및 개인 사례비 지급은 불가.

○ 지원사업의 자부담 비율(문화예술행사 50%, 세미나·포럼·워크숍 30%)

○ 사업장소 : 제주도내 문화예술인, 단체 - 도내, 도외 가능 / 제주도외 문화예술인, 단체 - 도내만 가능

## □ 국제문화예술교류 지원

○ 지원목적

국제 문화예술교류 및 학술세미나 등으로 문화예술 창작역량 강화

○ 신청자격

| 구분 | 내용 |
|---|---|
| 개인 | - 최근 3년간 도내에서 1회 이상 활동 실적이 있는 예술인 |
| 단체 | - 창단사업 후, 도내에서 1년 이상 활동하고 1회 이상 실적이 있는 문화예술단체<br>(단, 사설문화공간은 개관 후 1년 이상 운영하고, 2회 이상 기획 실적이 있는 공간) |

○ 대상사업

| 구분 | 대상 사업 | 지원규모 |
|---|---|---|
| 국제문화<br>예술교류 | - 문화예술교류 및 학술 세미나 등 다양한 교류사업<br>- 새로운 형식의 문화다양성과 공공성을 추구하는 기획사업 | 개인 250만원~1,000만원 |
| | | 단체 300만원~3,000만원 |

○ 제출서류

- 활동실적 증빙자료 : 홍보물, 보도자료 등 서식(p.24 양식2)에 작성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첨부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문예진흥법(제7조)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또는 단체는 증빙자료(등록증 사본) 1부 제출

**참고 및 유의사항**

○ 학부 및 대학원생의 석사학위청구 발표회, 행사 부속 행사는 제외됨.

○ 인건비성 경비(사례비, 원고료 등 각종 수당 포함)는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 · 납부하여야 함.

○ 단체대표자 및 보조사업자(개인)에 대한 원고료 및 개인 사례비 지급은 불가.

○ 지원사업의 자부담 비율(문화예술행사 50%, 세미나·포럼·워크숍 30%)



## □ 계층별 문화나눔 사업

○ 지원목적

다문화가정, 재외국인,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 신청자격

| 구 분 | 내 용 |
|---|---|
| 개인 | - 최근 3년간 도내에서 1회 이상 활동 실적이 있는 예술인 |
| 단체 | - 창단사업 후, 도내에서 1년 이상 활동하고 1회 이상 실적이 있는 문화예술단체 |

○ 대상사업

| 구분 | 대상 사업 | 지원규모 |
|---|---|---|
| 계층별<br>문화나눔 | -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기획사업<br>-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사업 | 개인 150만원~1,000만원 |
| | | 단체 200만원~3,000만원 |

○ 제출서류

- 활동실적 증빙자료 : 홍보물, 보도자료 등 서식(p.24 양식2)에 작성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첨부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문예진흥법(제7조)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또는 단체는 증빙자료(등록증 사본) 1부 제출

**참고 및 유의사항**

○ 공모전(참여) · 자선행사, 행사 부속 전시는 제외.

○ 단체의 연례적인 협회전, 회원전의 지원은 지양(止揚)하며, 회원들의 작품으로 구성된 기획주제전으로 신청하여야 함.

○ 인건비성 경비(사례비, 원고료 등 각종 수당 포함)는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 · 납부하여야 함.

○ 단체대표자 및 보조사업자(개인)에 대한 원고료 및 개인 사례비 지급은 불가.

○ 지원사업의 자부담 비율(문화예술행사 50%, 세미나·포럼·워크숍 30%)

## V 심의절차 및 기준

### □ 심의절차

| 구분 | 심의기준 | 심의대상 |
|---|---|---|
| 1차 행정심의 | 신청자격 여부 | 전체 지원신청자 |
| | 전년도 자체사업 실적 평가 반영 등 | |
| 2차 전문가 심의 |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 전체 지원신청자 |
| | 사업내용의 예술성 | |
| | 해당분야 발전 기여도 및 파급효과 | |
| | 신청인의 사업 추진 능력 | |

### □ 세부심의기준

| 심사항목 | 심사내용 | 지원사업 | 개인문학 창작집발간 |
|---|---|---|---|
|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 사업의 목적은 지원사업의 목표와 부합하는가? | 20 | 20 |
| |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 | |
| | 예산편성은 구체성과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가? | | |
| 사업내용의 예술성 | 사업내용은 예술적(작품수준)으로 우수한가? | 45 | 50 |
| | 사업계획은 참신하고 독창적인가? | | |
| | 사업에 참여키로 한 주요 출연진(참여자) 및 제작진의 예술적 기량은 우수한가? | | |
| 해당분야 발전도 및 파급효과 | 사업계획은 해당분야 발전 및 사회적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가? | 20 | 15 |
| | 사업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관객개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적정한가?(홍보, 발간 · 배포, 유통계획) | | |
| 신청인(단체)의 사업추진능력 | 사업계획을 충실히 실현하기 위한 조직과 운영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수행능력) | 15 | 15 |
| | 지원주체의 활동실적 및 사업성과를 볼 때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 | |
| 계 | 합계 | 100 | 100 |



# 사업예산 및 지원금집행 관련 안내

사업예산 및 지원금

# 집행관련 안내

■ **자부담 :** 자부담률을 확인하여 자체부담을 하여야 하며, 정산보고서의 집행내역 증빙자료는 지원금과 자부담 내용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변경 불가**

- 지원 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오니 사업비 및 지원신청액을 적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 교부 신청 시 내용(사업주최자, 사업규모, 주요 출연진 및 제작진, 작품)등이 지원 신청 시 내용과 크게 상이할 경우 지원금이 축소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나, 지원 신청액 보다 감액 확정된 경우 감액에 따른 사업변경 내용을 고려하여 반영합니다.

〈사업 변경 관련 세부 규정 및 조치 기준〉

| 변경 내역 | | 변경 정도 | 조치 사항 | 비 고 |
|---|---|---|---|---|
| 주최 | 사업주최자 | 사업 주최자 변경 | 지원금 취소 | |
| 규모 | 사업비 | 사업비 축소 | 지원금 삭감 | |
| | 사업일수 | 사업일수 축소 | 지원금 삭감 | |
| | 공연장소 | 규모(객석 수)<br>50% 이상 축소 | 지원금 삭감 | |
| 내용 | 주요 출연진<br>및 제작진 | 주요 출연진 · 제작진<br>50%이상 변경 및 축소 | 지원금 취소<br>또는 삭감 | |
| | | 연출가 변경 | 지원금 취소<br>또는 삭감 | 공연예술 분야 |
| | | 안무가 변경 | 지원금 취소<br>또는 삭감 | 공연예술 분야 |
| | 작품 | 작품 및 작가 변경 | 지원금 취소 | 공연예술 분야 |
| | 프로그램 | 공연 프로그램 50% 이상 변경 | 지원금 삭감 | 공연예술 분야 |
| | | 창작 초연이 재연작품으로서<br>50% 이상 변경 | | |
| 수행 | 사업수행 | 단체 귀책사유로 인한 공연 포기 | 익년도<br>지원대상 제외 | |

※ 세부사항은 각 사업별 상황에 맞춰 조정

■ **자부담 의무화(자부담률 확인)**

- 보조금수령자는 반드시 지원금과 자부담을 정산하고, 이에 대한 전체 집행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자부담 비율은 지원유형별별 지원금의 30%, 50%이며 지원신청액이 감액되면 지원선정된 금액의 자부담비율을 확인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지원유형에 따른 보조금 자부담률

| 지원사업유형 | 자부담률(최소) | 비고 |
|---|---|---|
| 세미나, 교육, 워크숍 | 30% | |
| 일반문화예술활동 | 50% | |



■ **자부담 지원유형별 30%, 50% 이상 의무화**

- **보조금수령자는 반드시 지원금과 자부담을 정산하고, 이에 대한 전체 집행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자부담 비율은 사업비의 최소 30% 또는 50%이상이어야 하며, 지원신청액이 감액되면 감액 금액비율로 자부담을 유지하여야 함**

예1) 지원신청 총사업비가 1,000만원(지원금 500만원, 자부담 500만원)
- 지원확정 지원금 500만원 인 경우 : 자부담 500만원 (50%)
- 지원확정 지원금 300만원 인 경우 : 자부담 300만원 (50%)

예1) 지원신청 총사업비가 1,100만원(지원금 500만원, 자부담 600만원)
- 지원확정 지원금 500만원 인 경우 : 자부담 600만원 (54%)
- 지원확정 지원금 300만원 인 경우 : 자부담 360만원 (54%)

**- 지원신청액이 전액 지원된 경우 자부담을 감액시킬 수 없음.**

**- 자부담액을 증빙하지 않는 해당 최종보조사업자에 대해 2년간 지원을 중단함.**

**(단, 불가피한 경우 도와 협의하여 인정받을 수 있으며 지원 중단 기간은 가감할 수 있음.)**

■ **지원금 사용이 가능 항목**

| 항 목 | 내 역 | 비 고 |
|---|---|---|
| **임 차 료** | 장소 대관료, 시설 이용료, 악기 임차료 등 | 구입비 불가, 현실을 반영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집행 |
| **작품제작비** | 대본료, 연출료, 안무료, 작곡료, 편곡료, 악보구입비, 원고료, 저작권료, 번역료, 작품비, 의상제작비, 액자구입비, 재료구입비 등 | 개인사례비는 관련세법에 따라 신고 · 납부 |
| **무대제작비** | 조명 · 음향기기 임차비, 무대(세트, 소품 포함), 제작비, 특수효과 등 | 구입비 불가, 현실을 반영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집행 |
| **홍 보 비** | 홍보물 인쇄비(소책자 등 포함),<br>홍보물제작비, 광고홍보비 등 | 현실을 반영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집행 |
| **창작인건비** | 출연료, 초청강사료, 연구 사례비, 원고료 등 | 개인사례비는 관련세법에 따라 신고 · 납부 |
| **진행인건비** | 제작진/감독 인건비, 심사비, 행사진행 인건비, 기획 인건비 등 | - 개인사례비는 관련세법에 따라 신고 · 납부<br>- 진행인건비는 1일 50,000원을 초과 할 수 없음<br>- 현실을 반영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집행 |
| **출 간 비** | 도서 인쇄비, 편집비 등 | 배부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한 배부기준을 마련하여 과다 인쇄 및 과다 예산 책정 금지 |
| **진 행 비** | 기록 촬영비, 운송비 등 | 현실을 반영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집행 |

■ **지원금 사용 불가한 항목**

- 단체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 및 인건비, 시상금 등
- 공공요금, 식비, 우편요금, 회의비 등
- 연주단체의 악기 등 예술단체에서 평상시에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기자재 구입비
- 외국인에 대한 출연사례비, 초청경비 등 직접경비라 하더라도 본 사업의 취지에 비추어 지원금으로 지출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비(사업기간 이외의 체재비 등)

※ 위와 관련된 경비 지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에 해당사유를 명기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지원금 전용카드 사용 및 정부보조금 회계 관리 규정 준수**

- 지원결정 단체(개인)는 지원금 전용 결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해 상시 온라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지원금 사용은 체크카드를 원칙으로 하며, 계좌이체 시에는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현금 지출 불가)

■ **모든 인건비성 경비 원천징수 의무화**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지급자가 지급받는 자의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가 면제되나, 신고의 의무는 있음

※ 원천징수 소득신고 기준 : 모든 인건비 대상

- 임의단체의 경우에도 원천징수 의무, 매입세금계산서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고유번호증 신청방법

※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청(문의전화 : 제주세무서 720-5405~08)

| 구분 | 구비서류 |
|---|---|
| 대표자 직접 방문시 | 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세무서에 비치)<br>2) 단체 성격을 알 수 있는 정관(회칙 등), 단체 구성원 명부<br>3) 대표선임을 했다는 내용의 회의록<br>4) 대표자 신분증<br>5) 단체직인 |
| 대리인 방문시 | 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증 신청서 (세무서에 비치)<br>2) 단체의 정관(회칙 등), 단체의 구성원 명부<br>3) 대표선임을 했다는 내용의 회의록<br>4) 대표자 신분증<br>5) 단체직인<br>6) 대리인 신분증<br>7) 위임장 |



**양식 1.**

**※ 반드시 원고 앞면에 놓이게 하여주시고, 실명은 기재 하지 마십시오.**

**제출 원고 묶음 표지**

2015년도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 (3차)
-문학창작활동 지원 지원신청 작품 원고

신청장르(해당란에 표시)

■ 시 □ 시조 □ 소설 □ 희곡 □ 수필 □ 동시 □ 동화 □ 평론

제출 작품

_____ 외 _____편

접수번호 :

**제출원고 묶음 표지 관련 사항(세부 설명)**

- 이 제출 원고 묶음 표지는 문학작품의 작품성을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해 **무기명**으로 작품원고를 받기 위하여 만들어진 서식입니다.
- 공정한 심의를 위해 반드시 원고 앞면에 놓이게 하여주시고, 실명은 기재 하지 마십시오.

양식 2-1. 증빙자료 - 개인

제주문화예술재단 JEJU CULTURE & ART FOUNDATION

# 2015년 생활문화예술활동 지원 공모(3차)
# 지원신청서(증빙자료-개인)

| | |
|---|---|
| **사업명(행사명)** | |
| **신청개인명** | |
| **신청유형** | □문학창작활동 □공연예술 □전시예술<br>□다원 및 예술일반 □국제문화예술교류<br>□계층별 문화 나눔 사업<br>※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 (☑, ■) 표시 |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의 "내 정보방>내 회원정보"도 심의자료에 포함됩니다. 반드시 최신정보로 수정,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시 유의사항**

- 지원신청서는 한글(HWP) 파일로 작성
- 사진 또는 이미지를 첨부할 경우 용량을 줄여서 첨부해 주십시오.
- 기본 양식(표)를 준수하되, 추가 내용이 있을 경우 양식(표)를 변경하여 작성하십시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지원신청 등록 시 첨부파일 이름은 '신청단체명' 으로 저장해서 첨부해 주십시오.

※ 단체지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을 첨부해 주십시오.

## 1 증빙서류(누락 시 심사제외 대상임)

※ 필히 본 서식에 기록 할 것
※ 칸이 부족한 경우 추가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 행사명, 일시, 장소, 주최, 주관 등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주십시오. (소책자, 표지 등)

양식 2-2. 증빙자료 - 단체

| 제주문화예술재단 JEJU CULTURE & ART FOUNDATION | 2015년 생활문화예술활동 지원 공모(3차)<br>지원신청서(증빙자료-단체) |
|---|---|

| | |
|---|---|
| **사업명(행사명)** | |
| **단체명(대표자명)** | ( ) |
| **신청유형** | □문학창작활동 □공연예술 □전시예술<br>□다원 및 예술일반 □국제문화예술교류<br>□계층별 문화 나눔 사업<br>※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 (☑ ■) 표시 |
| **연출/기획/극작/안무/음악감독/지휘** | ※ 장르 별로 해당 사항 있을 경우만 기재 |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의 "내 정보방>내 회원정보"도 심의자료에 포함됩니다. 반드시 최신정보로 수정,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시 유의사항**

- 지원신청서는 한글(HWP) 파일로 작성
- 사진 또는 이미지를 첨부할 경우 용량을 줄여서 첨부해 주십시오.
- 기본 양식(표)를 준수하되, 추가 내용이 있을 경우 양식(표)를 변경하여 작성하십시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지원신청 등록 시 첨부파일 이름은 '신청단체명' 으로 저장해서 첨부해 주십시오.

※ 단체지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을 첨부해 주십시오.



## 1 단체 회원 명단

**※ 필히 본 서식에 기록 할 것**

| 연번 | 성명 | 역할 | 성별 | 연령 | 소속및직책 | 경력 |
|---|---|---|---|---|---|---|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칸이 부족한 경우 추가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 2-1 단체 증빙서류(누락 시 심사제외 대상임)

☐ 단체의 경우 단체증빙서류를 붙여 주십시오.
(고유번호증, 사업자 등록증)



## 2-2 단체 증빙서류(누락 시 심사제외 대상임)

☐ 행사명, 일시, 장소, 주최, 주관 등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주십시오. (소책자, 표지 등)

(행사명, 일시, 장소, 주최, 주관 등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 넣습니다.
ex) 소책자 표지 등)